

2019 년 07 월 01 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 2019 년 7 월 1 일부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적용범위 변경

변경전	변경후
원화 2 천만원(외화 1 만불) 이상	전신송금: 원화 1 백만원 이상 (외화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그 외: 원화 1 천 5 백만원 (외화 1 만불) 이상

※ 관련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 고객확인제도란?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 이외에도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소유자 및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 의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고객확인 대상 거래

1.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신규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등

2. 금액기준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

금액기준

- 전신송금: 원화 1 백만원 (외화의 경우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 그 외: 원화 1 천 5 백만원 (외화 1 만불) 이상

◆ 고객확인 내용

1. 고객유형별 고객확인

구 분	신원확인 내용
개 인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및 외국단체	상기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즉,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신규계좌 개설 또는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지속적인 고객정보 재확인 절차

금융회사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행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정보 재확인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의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